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관계 법령 및 서식 등]

《 목 차 》

1. 응시결격 사유, 복수 국적자의 임용 및 시험의 정지, 무효 기준 등 ····· 1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4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5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6

5.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 9

6. 소방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 ····· 12

7.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 13

8.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공채)「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6 ····· 15

9.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가점 ····· 17

10.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7 ····· 19

1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별표4 ····· 20

12. 도핑테스트 안내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6호 ····· 22

13.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24

14.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요약) ····· 25

【서식 1】필기시험 문제문의서 ····· 26

【서식 2】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27

【서식 3】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28

【서식 4】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30

【서식 5】도핑테스트 동의서 ····· 32

【서식 6】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33

【서식 7】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34

1 응시(임용)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다른 법률 사례>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치료감호법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부패방지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3

구 분	내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구 분	내용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구 분	내용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가.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는 제외)인 경우
14. 정신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5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2024년)

□ 신체검사 지정병원: 77개소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 화 번 호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000 (내선 2) 02-2276-7158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5층, 종합건강진단센터	1577-0075 02-870-2039	
3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별관 3층 건강검진센터	02-2276-2335 02-2276-2355	
4	경찰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가락동),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802	
5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6	부산의료원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061	
7	부산보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8	좋은강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80 (남천동)	051-610-9865	
9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 2가)	053-200-5791	
1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신당동)	053-258-4171	
1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대명동)	053-650-3534	
12	대구의료원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053-560-7387	
13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신암동)	053-940-7522	
14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대명동)	053-620-3180	
15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학정동)	053-200-7101~2	
16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176	
17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수로 56, 뇌병원 3층 건강관리센터	032-280-6056	
18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33	032-836-1733	
19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구산동)	032-500-0266	
20	인천적십자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연수동)	032-899-4332	
21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300	
22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5	
23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07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24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042-670-5247	
25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울산 동구 대학병원로 25	052-250-8349	
26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울산	울산 중구 태화로 239	052-241-1471	
27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울산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052-259-5264	
28	엔케이세종병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61(나성동)	044-850-7888	신규
29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031-219-5608	
30	동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31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031-820-5334	
32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27	032-340-2169	
33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031-412-5390	
34	광명성애병원	경기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6	02-2680-7539	
35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1577-8013	
36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032-621-5500	
37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경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37	031-8041-3038	
3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정자동)	031-888-0576	
39	성남시의료원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성남시의료원 (태평동)	031-738-7007	
40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일동)	031-500-1182	
41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동)	031-828-5162	
42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기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신읍동)	031-539-9334	
43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 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 (금촌동)	031-940-9109	
4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당왕동)	031-8046-5131	
45	강원대학교병원(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033-258-2313	
4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상급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 2	
47	강릉아산병원(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48	청주성모병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043-219-8795	
49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사직동)	043-279-2366	
50	천안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094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51	공주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041-962-1232	
52	서산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041-689-7167	
53	홍성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77	
54	보령 아산병원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041-930-5555	
55	백제병원	충남	충남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취암동)	041-730-8985	
56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6	
57	대자인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063-250-8775	
58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지곡동, 군산의료원)	063-472-5151	
59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전북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063-620-1238	
60	목포시의료원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472	
61	성가롤로병원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907-7100	
62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271	
63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759	
64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89-1860	
65	김천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29-8212	
66	포항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054-245-0115	
6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055-360-1255	
68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 경희대학교교육협력중앙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055-330-6023	
69	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055-750-1325	
70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234	
71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2층 건강증진센터	055-214-2050	
72	창원파티마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53	
73	창원한마음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055-225-1302	
74	제주한라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298	
75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0	
76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608	
7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064-730-3029	

6 소방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

□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 검사 가능 병원: 5개소

연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경찰병원(국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269
2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0-7320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길 82	031-787-2114
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055-360-1255

- **색각 이상자의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병원(77개소)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위에 명시한 의료기관 외에 색각경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정기준

1색각(적색)			2색각(녹색)			3색각(청색)			색맹
약도	중도	강도	약도	중도	강도	약도	중도	강도	
O	불합격	불합격	O	O	O	O	O	O	불합격

↳ 색맹(녹색맹 포함)은 모두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

7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가. **기준일**: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응시자에 한함

나. **가점점수 및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과목별 만점의 10%: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 과목별 만점의 5%: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3호, 제5호

다. **적용범위**: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때에는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는 과목별로 가점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가점 산정 인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4조,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받아 합격하는 사람 포함)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마.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국가보훈처, 민원24)

바.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가점 불인정)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2. 의사상자 등

가. **기준일**: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응시자에 한함

나. **가점점수 및 대상자**: 만점의 3% 또는 5%

◆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는 대상자**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대상자**
- 취업호보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다. **적용범위**: 응시자의 과목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가점 산정 인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044-202-3255)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바.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3. 유의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하면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나. 가점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 (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점 표기 없음)

다. 가점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고

8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공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

분야 \ 가점비율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소방 업무 관련 분야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어 능력검정시험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	영어		1. TOEIC 800점 이상 2. TOEFL IBT 88점 이상 3. TOEFL PBT 570점 이상 4. TEPS 720점 이상 5. New TEPS 399점 이상 6. TOSEL(advanced) 780점 이상 7. FLEX 714점 이상 8. PELT(main) 304점 이상 9. G-TELP Level 2 75점 이상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 IBT 57점 이상 3. TOEFL PBT 489점 이상 4. TEPS 500점 이상 5. New TEPS 268점 이상 6. TOSEL(advanced) 580점 이상 7. FLEX 480점 이상 8. PELT(main) 242점 이상 9. G-TELP Level 2 48점 이상
	일본어		1. JLPT 2급(N2) 2. JPT 650점 이상	1. JLPT 3급(N3, N4) 2. JPT 550점 이상
	중국어		1. HSK 8급 2. 신(新) HSK 5급(210점 이상)	1. HSK 7급 2. 신(新) HSK 4급(195점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중직무분야 중 다음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채광(기술・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정한다)
2. 위 표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한다.
3.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로 한다.

9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가점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14 건설	141 건축 (29)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146 건설기계운전 (11)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15 광업자원	151 채광(3)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16 기계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31)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타워크레인설치·해체
	163 철도 (5)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164 조선 (7)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165 항공 (6)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항공기정비 항공전기·전자정비
	166 자동차 (8)	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18 화학	181 화공 (9)	화공		정밀화학 화공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182 위험물(3)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20 전기·전자	201 전기 (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202 전자 (22)			광학		
					광학기기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임베디드		
		전자응용				
						전자캐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운용
21 정보통신	211 정보기술 (15)			빅데이터분석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212 방송·무선 (6)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213 통신 (10)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25 안전관리	251 안전관리 (27)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252 비파괴검사 (15)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26 환경·에너지	262 에너지·기상 (13)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	신재생에너지발전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설비(태양광)	설비(태양광)

10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여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여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남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여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남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여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4

종목	측정방법 등
악력 (kg)	○ 측정 장비: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근력 (kg)	○ 측정 장비: 배근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시행한다.

종목	측정방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cm ○ 측정 방법: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회 ○ 측정 방법: 양발을 3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별도 ○ 측정 기록: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 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12 도핑테스트 안내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 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응시대상의 5%에서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90㎖)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오면 별도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오면「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 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13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Clenbuterol

2. 이뇨제: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총 11종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pentazocine
- pethidine

□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14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요약)

□ 면접시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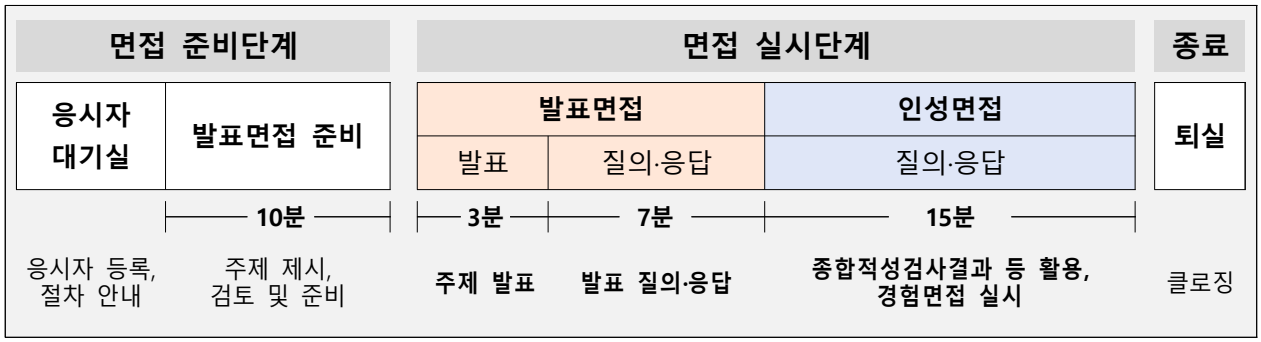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면접방법 : 개별 심층면접 (발표면접10분 + 인성면접15분)

※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

구분	평정요소 (5개 분야 50점)	S	A	B	C	D
발표면접	① 문제해결능력(10점)	10	8	6	4	2
	② 의사소통능력(10점)	10	8	6	4	2
인성면접	③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10점)	10	8	6	4	2
	④ 팀워크 및 협업능력(10점)	10	8	6	4	2
	⑤ 침착성 및 책임감(10점)	10	8	6	4	2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시험위원의 평균점수가 25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불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시험위원의 평균점수가 25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결정 -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서식 1】 필기시험 문제문의서

필기시험 문제문의서

문 제 문 의	성 명		응시번호	
연 락 처	휴 대 전 화			
	전 자 우 편			
응 시 분 야	응 시 시 도			
	응 시 분 야			
문 의 과 목	해 당 과 목			
	문 항 번 호	번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서식 2】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 접수자 인적사항

시 험 명		응 시 계 급	
성 명		응 시 번 호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2. 정정 신청 내용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3. 정정 사유

4. 첨부: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서식 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진 (3㎝×4㎝)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 분야	성명	생년월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색 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흡기질환			
간 질 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TBPE 검사 포함)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결과 합격여부	[ ] 합 격 [ ] 불 합 격 [ ] 판정보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약물(TBPE)검사시 검사결과에 대하여 정상(음성)이면 정상으로 작성하시고, 이상소견(양성) 있을 시에는 불합격 사유 또는 판정보류 사유에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서식 4】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여 □ 남 □
생 년 월 일		응 시 번 호	
휴 대 전 화		전 자 우 편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할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 명		전 공 분 야	
주 소		이 메 일	
전 화		팩 스	
서 명		날 짜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_____**날짜**:_____

부모/보호자 서명:_____**날짜**: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서식 5】 도핑테스트 동의서

도핑테스트 동의서

■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응 시 번 호		연 락 처	

본인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서식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소방청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table>
<tr><td>수집·이용 목적</td><td>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 의무이행 등</td></tr>
<tr><td>개인정보 처리 근거</td><td>「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td></tr>
<tr><td>수집·이용할 항목</td><td>–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응시 결격사유 등</td></tr>
<tr><td>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td><td>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제공받는기관</th><th>제공근거 및 목적</th><th>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th></tr>
<tr><td>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td><td>-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td><td>- 성명, 주민번호</td></tr>
<tr><td>국세청</td><td>-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사실 등 확인</td><td>- 성명, 주민번호</td></tr>
<tr><td>경력증명서 발급기관</td><td>-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td><td>-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td></tr>
<tr><td>대학 등 학위 발급기관</td><td>-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여부 확인</td><td>-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번호, 취득일자, 전공명</td></tr>
<tr><td>자격증 발급기관</td><td>- 임용령 제15조,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여부 확인</td><td>-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 번호, 취득일자</td></tr>
<tr><td>질병관리청</td><td>-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 관리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대상자 유무 확인</td><td>- 성명, 주민번호, 주소</td></tr>
<tr><td>출입국관리사무소</td><td>- 복수국적 확인용</td><td>- 성명, 주민번호</td></tr>
</table></td></tr>
<tr><td>보유·이용기간</td><td>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td></tr>
<tr><td>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td><td>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td></tr>
<tr><td>수집·이용 동의 여부</td><td>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td></tr>
</table>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소방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부정행위, 결격·범죄, 자격(응시요건) 확인 등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동의대상
1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서류제출자 전원
2	결격·범죄 통합 조회	서류제출자 전원
3	자동차운전면허증	서류제출자 전원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서류제출자 전원
5	기타 채용시험 관련 제출서류	서류제출자 전원

※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출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국가기술자격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인 방법(공동이용 행정정보)으로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아 서류의 진위 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이 불가능할 때는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방청장 귀하